

[별지 제14호서식] <개정 2015.1.6.>

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				처리기간
				즉 시
신고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(전화)		
변 경 사 항		변 경 전	변 경 후	
산후조리원의 명칭 변경				
산후조리원의 소재지 변경				
법인의 경우 대표자 변경				
산후조리원 면적의 증감				
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 고 인 (서명 또는 인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
구 비 서류	신고인(대표자) 제출서류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	수수료
	1. 산후조리원 신고증 원본 2.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	1. 사업자등록증[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(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사본 제출)] 2. 건축물대장[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증 감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(일반/집합)]		없음
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신고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				

210mm × 297mm[일반용지 60 g/m²(재활용품)]